



# 쓰레기 분리배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

분리배출 시작은 종량제 봉투 속에서 **비닐류**와 **종이류**를 분류해 내는 것부터 출발!

2016년에는

기간  
만료!

수도권매립지  
사용기간 만료!

2017년부터

직매립  
금지!

폐기물 처리  
수수료 3배 인상!

쓰레기 처리 위기상황입니다.

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으로 쓰레기절반줄이기에  
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종량제봉투 **미사용시** 과태료 10만원(최고 50만원),  
종량제봉투에 **재활용품 혼합배출시** 과태료 10만원(최고 50만원) 부과



# 재활용품 배출방법

분리수거함 구비시  
 품목별 수거함에 배출,  
 분리수거함 미구비시  
 투명(반투명) 비닐봉투에 함께 담아 배출

## 일반 재활용 품목

### 종이류

신문지, 전단지, 종이박스, 책자, 노트 등

- ☞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
- ※ 사용한 휴지, 1회용 기저귀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

종이팩(음료수, 우유팩 등), 종이컵

- ☞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
- ※ 별도 배출 가능한 곳에는 다른 종이류와 구분해 배출

### 캔 · 고철류

철캔, 알루미늄캔

- ☞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
- ☞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경우 분리하여 배출

부탄가스, 살충제 용기 등

- ☞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

공구, 철사, 못, 전선, 알루미늄, 스텐 등

- ☞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넣어 배출

### 병류

음료수병, 기타병

- ☞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
- ※ 소주병, 맥주병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 가능

### 플라스틱류

페트병, 샴푸 · 세제류, 장난감 등

- ☞ 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

페스티로폼

- ☞ 내용물 및 이물질(테이프 등)을 제거 후 배출

### 비닐류

과자 · 라면봉지, 1회용 비닐봉지 등

- ☞ 내용물을 비우고 날리지 않게 투명봉지에 담아 배출

## 기타 재활용 품목

### 형광등

형광등, LED, 기타 수은을 함유한 제품

- ☞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

### 건전지류

건전지

- ☞ 주요 거점(동주민센터, 편의점 등) 수거함에 배출
- ☞ 전지를 제품과 분리해 배출

### 섬유류

의류, 솜 없는 이불

- ☞ 의류수거함 등에 배출
- ☞ 물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

### 폐전자제품

세탁기, 에어컨, 냉장고, TV를 제외한 폐전자제품

- ☞ 공동주택 내 전용수거함에 배출
- ☞ 재활용품 배출 시 함께 배출